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9.

발 의 자 : 안태준 · 정준호 · 맹성규
문진석 · 한준호 · 소병훈
조계원 · 윤종균 · 허영
이광희 · 염태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,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,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·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가목 중 “추락·충돌,”을 “추락·충돌, 지하수의 변화로 인한 싱크홀,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인한 피해”를 “인한 피해, 지하수의 이용·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수도관 누수 등으로 인한 싱크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	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추락·충돌, 지하수의 변화로 인한 싱크홀,----- ----- -----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